

정책브리핑



정책브리핑 | 2023-6호 | 2023년 1월 26일 | 발행처 민주연구원 | 발행인 정태호 | idp.theminjoo.kr

윤석열정부의 2가지 정책오류 : 사라진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및 국세 5천억

채 은 동 연구위원

《 요약 》

■ 윤석열 정부는 “2023년도 예산” 수정과정에서 명백한 2가지 정책오류를 범함

■ 오류① : 사라진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

- 고향사랑기부제가 2023년부터 시행됐으나, 고향에 기부를 해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
- 정부가 작년 9월 기부금 세액공제의 2년 유예를 제안하여 통과 → 2025년부터 시행
 - 2022년 9월 기획재정부는 금융투자소득세의 2년 유예를 제안하면서,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조항까지 함께 2년 유예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제안했고, 해당 내용 그대로 국회 통과
- 대통령이 16개 시도에 30만 원씩 기부하는 등 홍보가 이미 시작 → 명백한 정책오류

■ 오류② : 사라진 국세수입 5천억 원

- 국회 세법수정에 따른 2023년 국세수입 증가분은 4,718억 원 (국회예산정책처 추정)
 - 법인세 최고세율 조정 : (현행) 25% (정부안) 22% (국회수정) 24%
 - 증부세 중과세율 조정 : (현행) 1.2%~6.0% (정부안) 0.5%~2.7% (국회수정) 0.5%~5.0%
- 하지만 정부는 국세수입 증가분 약 5천억 원을 2023년도 예산에 미반영 편성
 - 정부는 해당 국세수입 증가분 5천억 원의 규모가 미미해서 예산에 미반영했다고 설명했다, 국세의수입은 재화 및 용역 판매수입 감액분 1억 9,200만 원까지 세입예산안에 반영
 - 과거 2020년 법인세 2억 원 감액, 2021년 부가가치세 4억 원 감액 등 소액도 모두 예산에 반영

■ 정책제안

-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가 2023년부터 시행되도록 조세특례제한법 개정
- 사라진 국세수입 5천억 원을 세입 경정할 필요

▶ 키워드: 2023년도 예산,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, 세법개정 세수효과

♣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의견이며, 민주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.

1. 사라진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

○ 고향사랑기부제

- 제안 : 19대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공약으로 제안돼, 국정과제로 채택(2017년 5월)
- 내용 : 개인이 고향*에 기부할 경우,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을 주민복지에 사용하고 기부자는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을 받을 수 있음
 - * 기부자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상 거주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
- 법률 : 제도는 고향사랑기부금법으로, 기부금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으로 각각 법률 규정
 - 기부금 제도 :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(약칭: 고향사랑기부금법)
 - 기부금 공제 :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(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) 등
10만 원 이하분 100/110 공제, 10만 원 초과분 15% 공제율 적용
- 문제점 : 기부제도는 2023년부터 시행됐으나 기부금 세액공제는 미시행 → **미스매치**
 - 2022년 세법개정 과정에서 기획재정부가 시행 시기를 2년 유예 : 2023년 → 2025년
 - 고향에 기부를 아무리 많이 해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상황

○ 기획재정부의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2년 유예 : 2023년 → 2025년

- (입법 : 2023년 시행) 2020년 이개호의원 및 한병도의원 등이 대표발의하여 고향사랑기부제와 관련 조세특례제도 등이 2021년 11~12월 국회 통과. 단, 시행일은 2023년 1월부터 계획
 -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의 시행일은 조세특례제한법 부칙(2023.1.1.)에서 규정
 - 다만 고향사랑 기부금공제와 금융투자소득세가 동일하게 2021년 도입 및 2023년 시행이 계획돼, 양 조항의 시행일 규정을 함께 표기
- (유예 : 2025년 시행) 2022년 9월 기재부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2년 미루고자 하면서 고향사랑 기부금공제 조항까지 함께 2년 유예를 제안했으며, 내용 그대로 국회 통과
 - 정부는 2022년 9월 1일 “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”에 따라 2년 유예를 제안한 반면, 더불어민주당은 기존 세법대로 금투세 시행 등을 주장하여 관련 개정안 미발의
 - 윤석열 대통령도 16개 시도(서울 제외)에 30만 원씩 총 480만 원을 기부해 고향사랑 기부제도에 참여한 점을 감안하면 명백한 정책오류

<표 1>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개정연혁 :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

구분	형태	제출자	제안일	통과일	시행일	비고
도입	일부개정법률안	이개호의원 대표발의	2020.6.3.	2021.12.2.	6개월 후	대안반영폐기
	일부개정법률안(대안)	기획재정부위원장	2021.11.30.	2021.12.2.	2023.1.1.	대안가결
2년 유예	일부개정법률안	정부	2022.9.1.	-	2025.1.1.	수정가결
	수정안	류성걸의원등 40인	-	2022.12.23.	2025.1.1.	

자료 : 국회의안정보시스템의 법률안 자료를 바탕으로 민주연구원 작성

2. 사라진 국세수입 5천억 원

- 2023년 국세수입예산은 정부안 그대로 400조 4,570억 원이 국회 통과
 - 2023년 예산안 수정안 중 “총수입 세부내역(수입과목별 내역)”에 따르면, 국세수입은 증액과 감액 없이 400조 원 정부안 그대로 가결
 - 법인세율 조정 등 국회심의 과정에서 수정된 세법개정에 의한 2023년 세입변화분이 있으나, 정부는 해당 수치가 미미하여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설명
 - 다만 국세외수입 예산은 8.0억 원, △1.9억 원 등 소액 항목도 모두 반영한 점을 감안하면 정부의 설명은 일관성 결여
 - 국세외수입 : 수입대체경비 수입 8억원, 관유물매각대 48억원 등은 증액 요인으로, 재화 및 용역 판매수입 △2억원 등은 감액 요인으로, 각각 총수입예산에 반영

<표 3> 2023년도 총수입 세부내역

(단위 : 백만 원)

구분	정부안	증액	감액	증감	수정안
□ 국세수입	400,457,000	-	-	-	400,457,000
■ 소득세	131,863,200	-	-	-	131,863,200
■ 법인세	104,996,900	-	-	-	104,996,900
■ 상속세	17,127,400	-	-	-	17,127,400
■ 부가가치세	83,203,500	-	-	-	83,203,500
■ 개별소비세	10,194,300	-	-	-	10,194,300
■ 주세	3,215,100	-	-	-	3,215,100
■ 증권거래세	4,973,900	-	-	-	4,973,900
■ 인지세	815,800	-	-	-	815,800
■ 기타 내국세	4,792,600	-	-	-	4,792,600
■ 관세	10,723,700	-	-	-	10,723,700
■ 교통·에너지·환경세	11,147,100	-	-	-	11,147,100
■ 교육세	4,702,200	-	-	-	4,702,200
■ 농어촌특별세	6,988,000	-	-	-	6,988,000
■ 종합부동산세	5,713,300	-	-	-	5,713,300
□ 국세외수입	225,476,108	5,579	△263,590	△258,011	225,218,097
■ 사회보장기여금	86,115,783	-	-	-	86,115,783
■ 기업특별회계 영업수입	6,886,873	-	-	-	6,886,873
■ 재산수입	36,789,623	-	△219,925	△219,925	36,569,698
■ 경상이전수입	46,315,001	-	△1,732	△1,732	46,313,269
■ 재화 및 용역 판매수입	12,267,959	-	△192	△192	12,267,767
■ 수입대체경비수입	239,642	801	△4,140	△3,339	236,303
■ 관유물매각대	3,934,128	4,778	△34,260	△29,482	3,904,646
■ 용자및전대차관원금 회수	32,927,099	-	△3,341	△3,341	32,923,758
합 계(총수입)	625,933,108	5,579	△263,590	△258,011	625,675,097

자료 : “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(2022.12.24.)” 3쪽에서 발췌

○ 국회 세법수정에 따른 2023년 세입변화분은 4,718억 원으로 추정 (국회예산정책처)¹⁾

- 국회 심의과정에서 법인세, 종합부동산세, 소득세, 주세 등의 세법수정이 있었음

- 법인세 최고세율 조정 : (현행) 25% (정부안) 22% (최종) 24%
- 종부세 중과세율 조정 : (현행) 1.2%~6.0% (정부안) 0.5%~2.7% (최종) 0.5%~5.0%
- 월세 세액공제율 조정 : (현행) 10%~12% (정부안) 12%~15% (최종) 15%~17%

- 세법수정에 따라 2023년 총 4,718억 원의 세입 변경 예상

- 법인세율 조정은 중간예납 등의 과정을 거쳐 2023년 법인세입에 일부 영향을 미치며, 종합부동산세 세율 조정은 2023년 11~12월 종부세입에 직접 영향을 미침
- 월세공제 공제율 인상은 2023년 연말정산분(1~2월) 및 신고분(5~6월)부터 바로 소급적용
- 국회 세법수정에 의해 2023년 4,718억 원, 2023~2027년 5년 합계 6조 2,260억 원의 국세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

<표 4> 2022년 세법개정안 대비 국회수정사항의 세수효과 변동내역 : 국회예산정책처 추정 (단위 : 억 원)

구분	2023	2024	2025	2026	2027	합계
소득세 : 월세세액공제	△331	△375	△425	△482	△547	△2,160
법인세 : 세율조정 등	849	10,910	11,559	12,344	13,184	48,846
부가가치세 : 목재펠릿 면제 연장	△4	△4	△4	△4	△4	△20
증권거래세 : 세율인하(시행령)	-	△6,557	△1,346	0	0	△7,903
주세 : 물가연동 범위 축소	141	222	233	243	253	1,092
종합부동산세 : 세율조정 등	4,062	4,586	4,586	4,586	4,586	22,405
합 계	4,718	8,782	14,602	16,687	17,473	62,260

자료 : 국회예산정책처, 『2022년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』, 2023.1. 57쪽 참조하여 재편집

○ 과거 국세수입예산은 소액이라도 국회심의에 따른 세입변동을 모두 반영

- 2020년 법인세 2억 원 감액, 2021년 부가가치세 4억 원 감액, 2022년 농어촌특별세 12억 원 증액 등 과거에는 세입 수정액이 작더라도 해당 금액을 수입예산에 모두 반영

<표 5> 세목별 국세수입예산 조정내역 : 2020~2022년도 국세수입예산 (단위 : 억 원)

구분	소득세	법인세	부가가치세	개별소비세	종합부동산세	농어촌특별세	기타	국세수입 전체
2020년도	증액	-	-	-	-	-	-	-
	감액	△44	△2	△67	△173	-	△39	△422
2021년도	증액	-	-	-	-	-	-	-
	감액	△15	△119	△4	△285	-	△326	△749
2022년도	증액	7,997	11,570	14,246	-	7,528	12	21,654
	감액	-	-	-	△622	-	-	△15,036
								△15,658

자료 : 국회의안정보시스템의 2020~2022년도 예산안 자료를 바탕으로 민주연구원 작성

1) 국회예산정책처, 『2022년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』, 2023.1. 55~57쪽

- 문제점① : 정부는 불성실한 예산편성으로 불필요한 논쟁을 촉발했을 뿐만 아니라, 추가적인 세입경정 추경 등의 행정비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
 - 매년 반복되어온 예산 조정과정에서 정부의 불성실한 예산편성은 불필요한 논쟁뿐만 아니라 향후 추경편성 등 실질적인 행정비용을 초래할 수 있음
 - 과거 2015년 세수결손(-5.3조 원), 2021년 초과세수(+31.5조 원), 2022년 초과세수(+21.3조 원) 등 세입 예산과 실적 간 오차가 커짐에 따라 세입경정을 위해 추경이 편성된 바 있음
- 문제점② :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의 지방재정 증가분 미반영
 - 소득세, 법인세 등 내국세 감소에 의한 지방지자체 및 지방교육청 교부금 미반영
 - 소득세, 법인세, 부가가치세 등의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지방교부세(19.42%), 지방교육재정교부금(20.79%)으로 배분
 - 종합부동산세는 전액 부동산교부세로 기초자치단체에 교부되는데, 해당 금액 미반영

3. 정책제안

-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관련 법을 개정하여 2023년부터 시행 필요
 - 이제 막 시작한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조기에 잠재울 필요
 - 세액공제를 2023년부터 시행하도록 조세특례제한법을 즉시 개정 및 국회 통과 필요
- 예산에 미반영된 국세수입 5천억 원을 수입예산에 세입 경정할 필요
 - 국회의 세법수정 세수효과를 반영하지 않는 것은 예산심의의 근본을 무너뜨리는 행위이며 해당 수치를 다시 추정하여 예산안에 반영할 필요
 -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의 최근 기업 사업보고서 및 분기보고서 등을 참조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추정하고 변화된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다시 계산할 필요
 - 정부의 국세수입예산안은 8월에 작성해서 9월 예산안에 함께 제출하므로, 최근과 같이 거시경제 변동성이 커지는 경우 법인세 등의 세입이 맞지 않아 2022년에도 세입경정 사례 발생
 - 이미 계산된 종합부동산액은 국토교통부의 2023년 공시가격 하향조정 계획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이를 반영하여 종부세액을 다시 추정할 필요
 - 정부가 세입예산안을 제출한 이후 종부세 과세표준의 기반이 되는 공시가격 하향조정 계획이 발표(2023.1.25. 표준주택 공시가격 5.95% 하락 발표)됐으며, 해당 사항은 종부세 규모를 감소시킴
- 무능한 경제라인 쇄신 및 국회 협력 필요
 - 김진태발 채권시장 경색에 대한 판단 오류, 시행 계획된 제도조차도 2년 유예한 기획재정부의 법률개정 오류 등 윤석열정부 경제라인은 국민과 시장의 신뢰를 상실
 - 무능한 경제라인을 쇄신하고, 민생위기 극복에 있어 국회, 정부, 기업, 노동계가 참여하는 '범국가 비상경제회의' 구성을 제안